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73
----------	-----

제출년월일 : 2013. 11.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2013. 8. 6.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현장 대응단계(안 제3조)
- 나.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안 제4조)
- 다. 통합지휘소 구성과 임무(안 제5조)
- 라.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 마.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안 제8조)
- 바. 재난현장 상황 전파(안 제9조)
- 사. 재난현장 출동 요청(안 제11조)
- 아. 재난현장 상황 파악과 통보(안 제15조)
- 자.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안 제19조)
- 차. 복구체계로의 전환(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2013.9.26 ~ 2013.10.16) 접수된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완료
 -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인 충주시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관을 말한다.
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재난상황 전파부터 긴급 복구까지)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 소"라 한다)의 장인 충주시 부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6.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 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 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 상황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 현장 출동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출동 준비부터 재난현장 도착까지의 단계
- 현장 조치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 긴급 복구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현장에 인력이나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와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 여부를 판단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될 때
-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문화재 등 화재, 붕괴
-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이나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과 피해 발생
- 그 밖에 사회적 과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과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과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그 밖에 경보 발령, 피난 권고와 대피 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나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과 출입 제한 등의 조치, 통행 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③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 ④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 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려면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실·국장이 없으면 관련 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실·국장(실·국장이 없으면 소관 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 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 · 운영계획 통보)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 · 운영하려면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 · 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 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 유형별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 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 대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이나 재난 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 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

망을 통해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 지원)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인력이나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 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과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 유형별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 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이나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나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이나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 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제20조(긴급 복구 인력과 장비 지원 요청)**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할 때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 복구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되면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과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 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 복구 인력과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1. ~ 4. 생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8.6>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 2014.2.7] 제16조